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24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7. 19.경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의 소개로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금 20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차량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2,000,000원을 2021. 7. 20.경 C 주식회사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 매매대금을 205,7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정하였고, 원고 명의로 2022. 3. 2. C 주식회사에 19,714,000원 및 184,050,0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과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합계가 205,764,000원(= 2,000,000원 + 19,714,000원 + 184,050,000원)이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184,050,000원(= 이자가 붙는 원금 165,550,000원 + 부가가치세 18,500,000원)에 관하여 원리금을 신용카드회사인 D 주식회사에 할부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상환일정에 따라 원고가 상환할 금액은 2022. 4. 5.에 2,797,861원, 2022. 5. 5.에 2,732,996원, 2022. 6. 5.에 부가가치세 18,500,000원이 반영된 21,235,480원, 이후로는 2028. 3. 5.까지 매월 2,658,490원이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상환일정에 따른 총 상환금액이 210,202,146원으로서 대출금액 184,05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출금액 중 이자가 붙는 원금 165,550,000원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18,5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므로 총 상환금액이 위와 같이 된 것이다. 원고는 2022. 3. 2.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로 결제된 19,714,000원이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714,000원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결제된 것이다. 원고는 2022. 6. 5. 결제된 21,235,480원 중 18,500,000원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금액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8,500,000원은 조정된 매매대금 205,764,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의 부가가치세로서, D 주식회사의 할부금융으로 2022. 3. 2. 지급된 금액이 상환일정에 따라 2022. 6. 5. 원고의 계좌에서 결제된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건희

1) 피고가 2022. 10. 18.자 준비서면에 ‘청구취지에 대한 서면’이라고 기재하면서 18,500,000원을 변제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청구취지로 보기로 한다.